

[현장토론안]

금속노조 경주지부

14기 1년차

-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안)
-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 예산(안)

■ 일시: 2026/2/2(월), 지부 5차운영위에서 현장토론안 확정함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회의자료 순서

◆ 경주지부 14기1년차 사업 및 투쟁계획(안)

1. 정세	3
2. 사업 기조	5
3. 사업 계획	5
4. 세부 사업 계획	6
5. 부서·위원회별 사업계획	7
6. 교섭 및 투쟁 방침	23
7. 14기1년차 주요 투쟁흐름	26
8. 경주지부 2026년 집단교섭 요구안(초안)	27

◆ 경주지부 14기1년차 예산(안) 33

경주지부 14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안)

1. 정세

1) 개정 노조법 2·3조 상황

-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안)은 하청 단위의 원청교섭도 원청 사용자를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토록 설계되어 있음.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포함)과정에서 기준 교섭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음.
- 개정 노조법의 주된 취지인 '원청 사용자 책임'을 법·제도 문헌에만 의존해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직접적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둔 '진짜 사장 찾기'를 정부·국가 행정력에만 기대지 않고(또는 이를 활용 및 압박하면서), 금속노조 스스로 단체교섭 확장 투쟁을 적극 기획 및 실행해야 함.
-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해, 기업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설계된 현행 창구단일화제 폐기 투쟁도 함께 전개해야 함. 현행 기업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는 기업별로 쪼개진 교섭을 고착시킨 제도임. 업종별, 기업집단별, 공급망지위별 공동 대응 체계(초기업 교섭 내부 체계) 수립을 위해서도 현행 기업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 폐기를 금속노조의 핵심 요구로 함께 정립해야 함.
- 즉, 노조법 2·3 시행령이 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측의 의도적인 교섭해태 방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경주지부가 먼저 나서 사측의 교섭해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보호장치를 제안하고 만들어야 함.

2) 경주지역 사업장의 상황

-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해외 현지에 법인(공장)이 신설되어 현지(미국)생산 확대되고 있음. 경주지부 사업장 중 에코플라스틱, 아진카인텍 등이 해당됨.
- 경주지부 소속내에 내연기관 부품이 주력 생산품목인 사업장으로 발레오만도, 현담산업, 현우, 청우, 인지컨트롤스, 플라스틱옴니엄은 사업의 확대 및 시설투자(개발)는 하지않고 현상황을 유지하며 기존 경쟁사들의 사업전환으로 인한 물량을 확보 기조를 유지해나가며 신규채용은 없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원을 중점에 두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짐. 지부에서 유일한 건설기계 사업장인 명성공업은 현대건설기계의 합병 및 경영상황이 사업의 매출이나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명성자본의 신규아이템 수주가 요구되는 상황임.

- 내장·외장부품이 주력인 그 외 사업장은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완성차의 내수물량 생산감소로 인해 사업장별 구조조정 시도가 예상됨. 이에 저희·지부간 긴밀한 상시적 논의체계가 필요함(예: 25년 세진지회의 사례). 즉, 사업장별 경영상의 차이가 더욱 고착화 되어 가는 상황이며 사업장별 계열사를 설립·확대 운영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
- 25년 사업장 경영분석에서 확인한 것은 물가 인상 및 통상임금의 확대적용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한 완성차의 1차 부품사의 단가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올해는 '주휴일수당, 법정휴일 등의 요구가 실질 임금하락 없는 주 40시간 요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완성차 및 그룹사 소송 중)
- 지역내 현대그룹사인 현대아이에이치엘이 램프사업부 매각 관련 단체협약 및 25년 고용합의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청인 현대모비스의 교섭을 요구하고 경주지부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함.
- 경제상황 악화와 제조업산업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일부 사업장의 물량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지부는 완성차의 4.5일제 요구에 맞추어 임금저하 없는 교섭요구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하락을 방지 해야 할 것임

3) 경주지부 조직상황

- 경주지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29개지회 4,440여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부집단교섭에 올해부터 참가하는 리어코리아지회를 포함하여 14개 사업장(4,000여 명), 대각선 교섭은 4군데 사업장 비투지(46명), 청우(24명), 플라스틱옴니엄(98명), 현우(4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섭은 지부 임원이 관장하여 진행함. 소수노조 6개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부집단교섭 참가 비율은 90%. 대각선교섭 사업장 18%. 소수노조로 교섭권 없는 비율은 2%정도임. 지부집단교섭의 교섭력이나 합의의 효력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다수임. 여러 사회적 과제를 지부집단교섭의 의제로 만들어 조합원들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책무를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투쟁임.
- 대각선 사업장은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 확장투쟁을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경주지부 단체협약의 동일한 효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교섭권 없는 소수노조 6개 사업장 100명의 조합원의 권리를 확장하고, 소수노조의 조직확대로 이어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복수·소수노조 사업장을 수년간 이어온 조합원들은 해당사업장의 금속노조의 존재만으로 최소한의 노동권 및 임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주지부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임금인상을 넘어 경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현안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 내에 금속노조(민주노총)의 인식변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경주지역 내 민주노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경주지역 미조직 사업의 전망

- 경주지역의 100인 이상 사업장 중 다수의 사업장은 금속노조로 조직된 곳이며 금속노조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지회는 정년퇴직 조합원들이 확대되는 상황임. 매년 200명~300명 정도의 조합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신규조직화 사업이 확대되지 않으면 조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
- 경주지역 공단의 이주노동자·비정규직·영세사업장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함.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의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화 사업에도 여러 시도와 노력이 필요함. 영천지역의 조직확대 사업에 지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미조직 사업을 준비하고 거점을 확보하는 원년이 되어야 함.

2. 사업 기조

-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후속 사업을 배치한다.
- 조합활동 강화를 위한 청년사업 및 대중사업을 확대한다.
- 중소·영세 사업장 및 복수노조 지원 사업 확대로 조직을 강화한다.
-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및 이주사업 확대로 조직력을 강화한다.
- 지부 정치사업 복원 및 조합원 건강권, 교육사업을 확대한다.
- 2026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강화 및 집단교섭 협력 확대 적용한다.

3. 사업 계획

- 1) 노조·지부·지회 일체성 사업 강화
- 2) 조직강화위원회 활동 강화 및 복수노조 지원사업 강화
- 3) 미조직·비정규·이주 사업 확대로 신규 조직화 사업 강화
- 4) 조합원 건강권 사업 강화 및 교육 사업 확대
- 5) 지역사회 연대사업 확대를 통한 대중적 사업 확대
- 6) 2026년 단체교섭 승리 및 노조법 2·3조 확대 강화

4. 세부 사업 계획

1) 노조·지부·지회 일체성 사업 강화

- 사업장별 현안 발생 → 논의 → 실천 대안으로 집행력 결합 강화
- 조합원 참여 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지부·지회 소통사업 강화
- 중앙·지부·지회 통일적 일원화 집행을 통한 공동 사업 강화
- 세대별 조합활동 강화 방안 구축 – 지부 청년위원회 활동 신설

2) 조직강화위원회 활동 강화 및 복수노조 지원사업 강화

- 안정된 조직배가 사업비 지원을 통한 다수노조 전략화 지원
- 대각선 교섭 사업장 담당임원제 구성 – 상시 사업 결합
- 찾아가는 조직화 사업을 통한 소수노조 지원사업 강화
- 조직강화위원회 사업 확장으로 통일된 집행 사업 강화

3) 미조직·비정규·이주 사업 확대로 신규 조직화 사업 강화

- 영천공단 주체발굴을 통한 영천지역 미조직 조직화 사업 확대 실현.
- 민주노총·이주노동자센터 공동사업을 통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확대
- 지부 미조직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지회별 미조직사업 결합력 강화

4) 조합원 건강권 확장 사업 및 교육 사업 확대

- 건강권 보장, 복지, 여가활동 향상을 위한 지부·지회 회의체계 신설 (MOU체결 확대)
- 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지회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및 회의를 통한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강화
- 교육 사업 강화를 통한 간부육성(MZ세대)사업과 갈등완화 교육 사업 배치
- 교육방식 다양화 방안 확대를 통한 참여형 교육사업 연속성 강화

5) 지역사회 연대사업 확대를 통한 대중적 사업 확대

- 2026년 지방선거 대응방안 수립 및 진보정치 강화를 위한 정치위원회 사업 복원
- 사회 연대사업 확대 및 지역 내 노동조합 인식개선 활동 결합 강화
- 노·사 사회공헌기금 다변화 및 지역사업 확대 기풍 마련
- 대시민 사업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및 지역 진보단체 결합 확대

6) 2026년 단체교섭 승리 및 노조법 2·3조 확대 강화

- 대각선 사업장 지부협약 확대를 통한 연속 사업 강화
- 지부·지회 집단교섭 의제 발굴·확장을 위한 단체협약위원회·정책사업 결합 확대
-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후속 사업 배치를 통한 노조할 권리 강화
- 노정 협의체 관련 지역 내 총고용 및 노동조합 개입력 확장 체계 마련

5. 부서·위원회별 사업계획

5-1. 조직부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노조·지부·지회 일체성 사업 강화 확대
- 2)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역량강화 및 각종 연대사업 강화
- 3) 지부 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참여 확대

2. 사업계획

1) 노조·지부·지회 일체성 사업 강화 확대

- 상시적인 지회 방문을 통해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며, 실천 중심의 사업 추진
- 주 1회 지부담당 사업장 현장순회 및 간담회를 통한 지부·지회 간 유대감 강화
- 노조·지부·지회 조직담당자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공동 대응 역량 및 조직 결속력 확대

2) 지부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역량강화 및 각종 연대사업 강화

- 정례화된 조직담당자 회의를 통해 조합·지부 방침 복무, 사업장의 조직현황 점검을 통한 조직력 강화
- 조직담당자 선동 교육 및 실천 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 능력과 조직 역량 제고
 - 노조·지부·지회 역량강화교육(권역별 교육 or 중·장기적 선동집중 강화 교육) 실시
- 지회별 주요 현안과 투쟁 계획을 공유하여 공동 대응이 가능한 사안은 지부 차원의 연대사업으로 전환

3) 지부 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참여 확대

-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소통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조합원 간 유대감과 소속감 강화
- 13기 조합원 참여사업의 후속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동 참여형 사업을 통해 조직 외연 확대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월	202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조직·쟁의·선봉·문체)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3	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5-2. 조직강화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복수노조 조직배가 사업비 확대 강화 및 조직배가 사업 실천 사업
- 2) 대각선 교섭 사업장 지부집단 효력 확대 강화
- 3) 조직강화위원회 강화 사업 - 정기적·상시적인 논의 체계 정립

2. 사업계획

1) 복수노조 조직배가 사업비 확대 강화 및 조직배가 사업 실천 사업

- 다수노조 전략 사업장 조직배가 사업비 확대로 실천 사업 강화
- 조직배가 기획사업을 통한 조직력 확보 사업 확대
- 노조·지부·지회 사업 결합을 통한 집행력 강화 사업 확대

2) 대각선 교섭 사업장 지부 집단 효력 확대 강화 사업

- 지부집단 협약 효력 확장 체계 정립 및 회의체계 강화
- 대각선 교섭 사업장 지원 사업 강화
- 지회별 현안 맞춤형 교육배치를 통한 사업 집행력 강화

3) 조직강화위원회 강화 사업 - 정기·상시적 논의 체계 정립

- 조직강화위원회 확대 임원 간담회 정례화 및 실천 사업 확대
- 지회별 사업 결합력 확대 방안 및 공동 대응 사업 구축
- 지부담당자 지회별 순회 간담회 및 정기적인 현장 활동 지원 사업 확대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합동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3	지회 대면사업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5-3. 미조직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미조직·비정규·이주노동자 조직확대 사업 강화
- 2) 공단 지역 조직화 특화 사업을 통한 미조직 조직화 주체 활동 강화
- 3) 지부 미조직위원회 활동 강화 및 지회별 네트워크 조직화 사업
- 4) 지부 조직 유관 업무 강화 및 조직·미조직부 활동 확대

2. 사업계획

1) 미조직·비정규·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강화 확대

- 지부·지회 이주노동자 인식 개선 사업 - 이주노동자 조직화 확대
-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조직 및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 사업 확대
- 신규지회 상시적 결합 체계를 통한 집행력 강화 확대
- 미조직 SNS 오픈 채팅방 개설을 통한 상담 영역 확대

2) 공단 지역 조직화 특화 사업 및 미조직 조직화 주체 발굴 전개

- 영천도남공단 미조직화 주체발굴 및 공동 실천 사업 확대
- 미조직 노동자 대면사업을 통한 노조가입 및 홍보 사업 확대
- 찾아가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 확장 및 시기별 의제 사업 강화

3) 지부 미조직위원회 활동 강화 및 지회별 네트워크 조직화 사업

- 노조·지부·지회 공동 사업 확대 및 실천사업 결합
- 미조직위원회 상담 메뉴얼 교육 사업 강화 - 지회별 조직화 찾기 접조직 연결 사업 전개
- 지부 미조직위원회 - 지부사업 조직화 확대를 통한 미조직 조직화 사업 연계

4) 지부 조직 유관 업무 강화 및 조직·미조직부 활동 확대

- 미조직·조직사업 유관 업무 공유 및 사업 확장을 통한 활동 강화
- 신규조직화 상담 - 조직화 전술 공유 - 조직화 사업 유관 업무 연계 확장
- 상시적 사업 결합 - 조직·미조직부 역량 강화 사업 확대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미조직 선전전 사업 (현수막게첨 등 홍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3	상담 및 조직화 간담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이주노동자사업 (이주조합원 간담회, 이주조합원의 날 등)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5	신규 조합원 간담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5-4. 교육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현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의 통일성을 높임
- 2) 조합원 및 간부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방식 다양화 추진
- 3) 신규. 중소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 교육사업 지원

2. 사업계획

1)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사업 통일성

(1) 교육역량강화

- 민주노총. 금속노조 교육역량 관련 교육 및 수련회 참여
- 지부 교육위원회 월1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2) 교육사업 통일성

- 일반교육 지회간 교류 및 의무교육실시 집중성 강화
- 교육담당자·교육위원의 교육사업 역할 분담(기획, 교안작성, 교육실시등)

2) 조합원 및 간부교육 다양화와 참여형 교육 추진

(1) 조합원 교육

- 조합 및 지부 의무교육 강사단 운영
- 하반기 지부 의무교육으로 갈등전환 교육 추진
- 금속노조 강령교육, 기본교육 조합원교육 추진 및 강사훈련 배치
- 신규·중소·조직강화위원회·복수노조 사업장 대상 교육 배치

(2) 간부 교육

- 신임간부 교육을 매년 초(2월)에 실시
- 지부 교섭위원 의무교육 집단 교섭기간(4월~7월 진행)
- 조합·지부 확대간부 교육진행
- 지부 확대간부교육(1일) 참여형(1회차 40~50명) 기획교육 추진
-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1팀 이상 진행

3) 신규, 중소지회 사업장 교육사업 지원

- 신규·중소 사업장 교육지원
- 신규·중소·복수노조 사업장별 교육사업 추진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조합원, 지부 의무교육준비 강사단훈련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3	조합원 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4	교육역량강화 및 훈련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5	간부의무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6	교섭위원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7	신임간부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8	노조간부기본과정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월별 사업일정

월	사업내용	일정	장소	참고(조합)
1	1차 교육위원회의	1/16	지부회의실	
2	2차 교육위원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2/6	다스지회	
	신임간부교육	2/12~13	성호리조트	노조법시행령교육
3	3차 교육위원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3/26~27 (수련회)	성호리조트	의무교육 강사단훈련 (3/17)
4	역량강화교육	4/10	디에스시지회	
	교섭위원교육	4/23, 4/30	미정	
	당선자 의무교육	4월 중	미정	5.18강사단훈련, 조합원 의무교육
	노조간부기본과정	미정	미정	
5	4차 교육위원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5/7	리어코리아지회	
	교섭위원교육	5/14, 5/21, 5/28	미정	
	노조간부기본과정	미정	미정	연수원증급 시연 조합원의무교육

월	사업내용	일정	장소	참고(조합)
6	역량강화교육	6/5	에코플라스틱지회	확대간부교육
	교섭위원교육	6/4	장소 미정	
	확대간부교육	6/9~10, 6/16~17 6/30~7/1	단양 연수원	
	노조간부기본과정	미정	미정	
7	5차 교육위원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7/10	엠에스지회	증급과정 강사단훈련
	노조간부기본과정	미정	미정	
8	역량강화교육	8/14	일진베어링지회	강령 강사단훈련
	하반기조합원교육, 확간교육준비회의	8/21	미정	
9	6차 교육위원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9/11	우영산업지회	
	지부 하반기조합원교육(갈등전환), 지부 참여형 확간교육(10회)	미정 (주 2~3회)	미정	
10	지부 하반기조합원교육(갈등전환), 지부 참여형 확간교육(10회)	미정 (주 2~3회)	미정	갈등전환 강사단훈련, 교육활동가대회
11	7차 교육위원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11/19~20 (수련회)	미정	증급과정 강사단훈련
	지부 하반기조합원교육(갈등전환), 지부 참여형 확간교육(10회)	미정 (주 2~3회)	미정	
12	8차 교육위원회의 및 역량강화교육	12/11	코리아에프티지회	

5-5. 선전부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조합원 참여를 중점에 둔 소통의 매개체로서 지부 사업과 활동 공유
- 지회별 활동 공유를 통한 지부·지회 일체성 강화
- 지회 선전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현안 대응과 기획 사업의 균형 유지

2. 사업계획

1) 조합원 참여형 콘텐츠 기반 마련

- 정례적 지부 소식지 발행 (온·오프라인 문서/영상 소식지)
 - 소식지 및 영상 콘텐츠 내 조합원 참여 코너 확대 방향 설정
 - 지부·지회 소통 및 회의를 통해 공동 소식지 발행체계 구축
 - 참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짧은 형식의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
- 지부 집단교섭 속보 당일 발행
- 필요 시 대자보 등 매체 활용
- 지부 홈페이지 관리

2) 지회 소식 통합 전달 매체 운영

- 지회별 소식 정기 취합 및 공유
 - 발행 주기: 격월 1회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어려우면 분기별로
 - 구성: 지회별 1건 내외의 간단한 소식 정리 (3~500자 내외)
 - 매체 형태: 온라인 중심, 필요 시 소량 인쇄 병행
- 지회별 개별 소식지 제작 부담을 줄이고, 지부 차원의 통합 공유 창구 역할 수행
- 경주지부배 사진전 개최: 지회별로 생산된 사진 중, 1장을 선정 연말 전시회 및 시상식 진행 (평조합원 참여가능)

3) 지부 소식지 및 교섭·현안 속보 운영

- 지부 소식지 기준 정례 발행 체계 유지
- 단기 속보 위주 구성에서 점진적으로 기획형 기사 비중 확대
- 고정 코너 운영을 통한 편집 안정화
- 교섭·투쟁 속보
 - 교섭 국면 및 긴급 현안 발생 시 신속 발행 유지
 - 제목·구성·분량 표준화를 통해 제작 부담 완화

4) 선전부 교육 체계 구축

- 정례 교육 원칙
 - 분기별 1회 이상 정례 교육 진행
 - 회의와 분리된 교육 시간 확보
- 교육 구성
 - 상반기: 기초·보수 교육(초임 선전부장 중심 / 2~3월에 집중교육)
 - 하반기: 심화·보수 교육 및 사례 공유
 - 교육 결과물을 실제 콘텐츠 제작으로 연계

5) 선전부 회의 운영

- 연 8회 정례 회의(수련회 2회 포함) 진행
- 지회 소식 공유, 현안 대응 방향 논의, 콘텐츠 기획 중심 회의 운영
- 회의 결과 간단 기록 공유를 통해 지속성 확보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3	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소식지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5	지부, 지회 통합 소식지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6	지부 교섭 및 투쟁속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5-6. 총무부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1) 지회별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총무 사업 운영
- 2) 지부·지회의 총무·회계업무의 통일된 기준 확립 및 관리체계 강화
- 3) 지회 회계담당자 교육·지원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

2. 사업계획

1) 지회별 업무지원으로 안정적 총무 사업 추진

- 조합·지부 의결 사안에 대한 집행강화 모색
- 사무장단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회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일관성 확보
- 지회 회계업무 지원 강화로 현장 중심의 총무 운영 안정화

2) 지부-지회 총무·회계업무의 통일된 기준 마련 및 강화

- 지회 간 소통 강화로 지회별 총무 회계 기준 통일성 확보
- 총무·회계 메뉴얼, 감사 기준, 단체협약 DB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 보완
- 표준화된 업무 기준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

3) 지회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 정기·상시 총무·회계, 교육 운영으로 이해도 향상
- 신규사업장 총무·회계 업무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집중 지원
- 지회 회계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학습 및 문제 해결 지원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무장 및 총무 담당자 회의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2	사무장 및 총무 담당자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3	지부, 지회 회계 운영 효율성 강화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지회 업무지원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5-7.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1) 조합원 건강권 확장 사업 강화
- 2) 노안 교육 강화 및 노안 활동가 역량 강화
- 3) 산재처리 지연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강화
- 4) 현장·실천중심의 노안 사업 정착

2. 사업계획

1) 조합원 건강권 확장 사업 강화

-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부·지회 협의체 신설(MOU체결 확대)
- 경주지부 8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진행
-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시민 선전전 등 투쟁활동 집중

2) 노안 교육 강화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역량 강화

(1) 노안 교육 체계 검토 및 개선

- 1월말~2월초 : 신임 노안 간부교육
- 직전 기수(13기)에 노안업무를 맡지 않았던 노안간부를 대상으로 노안 투쟁의 역사, 노안간부의 자세 등 노안 투쟁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해 투쟁을 결의하는 장 마련
- 3월 : 권역별 위험성평가 교육
- 4월~7월 : 노안 활동가 양성교육 (1회차 1주제)
- 12월 : 1년차 노안 활동가대회 (2년차 노안 활동가대회는 9월 예정)

(2) 노동안전보건위원회-지회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및 회의를 통한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 강화

3) 산재처리 지연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강화

- 노동부 산재처리 기간 단축 계획 규탄 및 실질적 단축 투쟁 전개
- 산재처리 지역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근로복지공단의 불합리한 산재처리 업무 처리 규탄 및 개선 투쟁

4) 현장·실천 중심의 노안 사업 정착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 대응 지원
- 산재 발생 사업장 현장 점검 및 대응 자문
- 사업장별 노안 사업체계 및 진행상황 점검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노동안전보건 집행강화 활동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3	역량강화 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산재 실태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5-8. 정책·법규·조사통계부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1)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강화
- 2) 지부·지회 임·단협 지원 및 지부 집단교섭 중장기 의제 마련
-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4)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강화

2. 사업계획

1)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강화

- 정기적 회의를 통해 정세와 주요 쟁점 공유 및 대응 논의
- 매 분기 주요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2) 지부·지회 임단협 지원 및 지부 집단교섭 중장기 의제 마련

-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장기적 의제 마련 및 후속 지원사업
- 25년 경주지부 단체협약(지회별) 모음집을 제작하여 사업장별 기초자료 활용
- 사업장 경영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논의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 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정년연장 및 고용,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논의 및 사업
- 노동개악 저지 및 노동법 개정 요구 확산 방안 마련
-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 논의 및 지자체와 방안 마련 및 요구
-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교육배치 및 사례교육

4)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제고

- 금속노조 (경주) 법률원과 집단 고문 계약 체결을 통해 일상적 법률지원
- 조합원 상시적 생활법률 상담 지원 (경주법률원) 체계 유지
- 금속 법률학교 적극적인 참가 및 지부 차원의 법률 역량 강화
- 노동법 개정 및 개악 시 내용을 분석하여 조합·지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임단협 지원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3	법률대응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월별 사업일정

월	내용	기타
1	1차회의 / 정책부 사업계획 검토	
3	2차회의 / 사업장별 단협 개정안 공유 / 노조법 2·3조 교육	
4	3차회의 / 상반기 정책담당자 수련회(정세교육)	
5	4차회의 / 사업장 경영분석 / 금속 법률학교(경주)	- 사업장별 순회하며 회의 및 현장순회 진행
6	5차회의 / 역량강화교육(자동차업종 전망)	
7	6차회의 / 사업장별 단협 모음집 제작	
10	7차회의 / 현대차지부 방문 및 정세교육(현대차지부 정책실장)	
11	8차회의 / 하반기 수련회(1년차 사업평가 논의)	

5-9. 여성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안정적 여성위원회 운영 및 여성간부 역량강화
- 2) 성폭력 예방 및 평등문화 확산
- 3) 지역 여성·인권단체와의 교류 확대

2. 사업계획

1) 안정적 여성위원회 운영 및 여성간부 역량강화

- 정례회의 안정화, 내용강화 및 여성위원회 수련회 진행
- 여성간부 수련회를 통해 지부 여성사업 확대
- 여성위원(간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진행

2) 성폭력 예방 및 평등문화 확산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평등 교육 확대
-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운영

3) 지역 여성/인권단체와의 교류 확대

- 세계여성의날, 최저임금인상 요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기획 및 참여
- 지역 여성·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 진행
- 타산별연맹 및 타지역 여성사업 사례 학습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여성간부 역량강화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3	성평등 문화 확산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지역연대 사업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월별 사업일정

월	내용	기타
---	----	----

월	내용	기타
1	[1차회의] 여성위원회 사업계획 논의	
2	[2차회의] 3.8 세계여성의 날 사업 점검	
3	2026년 여성조합원 단합대회	
4	[수련회] 현대자동차 현장순회	
5	[3차회의] 역량강화 교육1	
6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수련회 (날짜 미정)	
7	[4차회의] 역량강화 교육2	
8	[5차회의] 역량강화 교육3	
9	민주노총 여성활동가대회 (9/16~17)	
10	[수련회] 경주지부 여성간부 수련회 성평등 어울어짐 축제	
11-12	[6차회의] 역량강화 교육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별 순회 진행 - 역량강화 교육(총 3회)의 경우 기획사업으로 진행예정 -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5-10. 정치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경주지부 정치위원회 회의체계 구축
- 2) 노동자 정치세력화 교육 및 선전활동 강화
- 3) 진보정당과의 연대 강화

2. 사업계획

1) 경주지부 정치위원회 회의체계 구축

- 경주지부 정치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수련회 진행
- 지회 임원 중심 정치위원회 담당자 선임으로 실행력 강화

2) 노동자 정치세력화 교육 및 선전활동 강화

- 지부·지회 정치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선전 활동 진행

3) 진보정당과의 연대 강화

- 정치위원회와 진보정당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
- 노동조합 의제 및 지역 의제 쟁점화를 위한 기획 및 연대요청
- 지방선거 또는 각종 선거 지원활동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	------	---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			□			□			□	
		실적												
2	교육 선전 활동	계획		□			□			□			□	
		실적												
3	연대 활동	계획	□	□	□	□	□	□	□	□	□	□	□	□
		실적												

5-11.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청년위원회 발족을 통한 청년사업 초반 기틀 마련
- 2) 청년간부·조합원이 지부사업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3) 청년간부·조합원 역량강화를 통해 차세대 간부 육성
- 4) 청년조합원 인식도조사를 통한 지부 내 청년사업 계획도 세부적 마련

2. 사업계획

1) 청년위원회 발족을 통한 청년사업 초반 기틀 마련

- 청년위원회 발족식 진행
- 청년위원회 안정적 운영
 - 청년 조합원이 회의·사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로와 틀을 마련
 - 청년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참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기 구조 구축

2) 청년조합원이 지부사업에 의견을 내고 주체가 되어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역사탐방단 운영: 5.18 기행, 전국노동자대회 청년선발대
 - 조합 5.18 강사단양성교육 참여 및 역사기행 사전답사, 전국노동자대회 청년선발대 운영
- 청년조합원의 취향·관심사 중심의 결합을 도모하는 청년조합원 자율 소모임 구성 및 지원

3) 청년간부·조합원 역량강화를 통해 차세대 간부 육성

- 청년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진행(연1~2회)을 통해 청년조합원의 자발적인 문제의식 형성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부·지회 사업방식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문제의식) 중심의 교육 진행

4) 청년조합원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부 내 청년사업 계획도 세부적 마련

- 지부 내 청년조합원 현황 통계자료 구축
- 지부 내 청년조합원 대상 지부(지회) 사업 인식조사

- 청년조합원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장기적인 청년사업 계획 논의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6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발족식 포함)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2	선전지 제작 및 배포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3	청년조합원 설문조사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역사탐방(5.18, 전국노동자대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적													
5	자율 소모임 구성 및 지원	계획				<input type="checkbox"/>									
		실적													

4. 사업일정 세부내용

1) 청년위원회 모집

- 모집기간: 2월 5일(목) ~ 3월 2일(월)
- 대상: 금속노조 경주지부 40세 미만 조합원(1987년 이후 출생자)
- 방식: 지회별 담당자 선임(간부/조합원)

2) 청년위원회 발족식

- 일시 및 장소: 3월 중, 별도의 회의장소
- 목적: 청년위원회 출범과 운영원칙 공유, 청년위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출발점 마련
- 내용: 청년위원회 의미, 참여자 및 구성원 소개, 앞으로의 역할 및 계획 소개
- 기대효과: 참여자 간 최소한의 신뢰 형성 및 참여지속의 기반 마련

3) 청년위원 역량강화 교육

- 방식: 연 1~2회 강의진행. 질문 및 대화 중심의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
- 내용: 조합의 역사와 역할 / 노동환경 및 정세 변화에 부합하는 조합 사업방식 전환(재설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조합의 역사와 현재상황을 터득함과 동시에, 조합 사업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하여 청년위원의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4) 청년조합원 설문조사

- 일시: 가능한 2/4분기 내 진행하여 청년사업 집행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함
- 방식: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익명성 확보
- 내용(가) ※설문조사 설계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지회별 청년 조합원 수, 연령대 추이, 성별 구성 등 기본 현황 파악

- 조합 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
- 지회 및 조합 간부에 대한 인식
- 조합 활동 중 참여해보고 싶은 영역 및 관심 분야
- 지회별로 운영 중인 소모임, 자율모임 여부 및 참여 경험
- 설문조사 또는 간단한 온라인 조사 방식 활용
- 응답 부담을 최소화한 문항 구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청년 조합원의 현실과 요구를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형식적·추상적 청년사업이 아닌 실제 청년조합원 인식에 기반한 교육·참여 사업 설정의 근거를 마련

5) 역사탐방단 운영

① 5.18 역사기행

- 일시: 2026년 5월 중
- 장소: 광주 (5.18 사적지, 망월동공원묘지 등)
 - ※ 세부내용은 별도의 사업계획 제출을 통해 투쟁기금(운영위 승인) 결의 요청 예정
- 사업목적: 회의나 집체교육 중심이 아닌 조합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내용: 소수의 청년위원을 5.18 역사기행 탐방기획단으로 별도 구성하여 사전답사 및 역사기행 관련 실무를 함께 진행함(탐방 기획회의 등). 이를 통해 청년위원이 조합 사업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
- 기대효과: 조합사업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경험)하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여 조합 활동에 부담없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②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및 청년선발대 운영

- 일시: 2026년 11월 중
- 장소: 서울 (전태일기념관,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조합 사무실 등)
 - ※ 세부내용은 별도의 사업계획 제출을 통해 투쟁기금(운영위 승인) 결의 요청 예정
- 사업목적, 내용 및 기대효과: 5.18 역사기행 내용과 동일

6. 교섭 및 투쟁 방침

6-1. 교섭방침

- 가. 중앙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한다.
- 나. 집단교섭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지부로 위임 시에 집단교섭에서 진행하며, 집단교섭 미참가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대각선교섭에서 한다.
- 다. 사업장교섭은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하되 조합과 지부의 교섭방침에 따른다.
- 라. 중앙 및 지부의 통일(공동)요구안과 지부 집단협약이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협에 반영하여 요구한다.
- 마. 사업장 중 요청이 있는 사업장은 요구안 준비단계부터 조인식까지 지부가 주관한다.

6-2. 교섭군 편성 방안

구분	해당 사업장	비고
집단교섭	금강지회 다스지회(아산지회) 디에스시지회(광주지회) 리어코리아지회 명성공업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아산지회) 세진지회 에코플라스틱지회 엠에스지회 우영산업지회(광주, 천안지회) 일진베어링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요청사업장
대각선교섭	비투지지회 현우지회 청우지회 플라스틱옴니엄지회	김재홍 수석부지부장 이명호 사무국장 황준하 부지부장 우정식 부지부장
별도교섭	KBI동국실업지회 (아산/울산 한노총) 현담산업지회 (아산) 현대엠시트지회 (아산)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공동교섭 진행) 코리아에프티지회(안성)	충남지부 주관 충남지부 주관 충남지부 주관 <u>대구, 울산지부 주관</u> 경기지부 주관

6-3. 교섭원칙

- ①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지부 집단교섭은 매주 목요일, 사업장 보충교섭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한다.
- ② 지부 집단교섭은 사업장을 순회(가-나-다 순, 오후 2시)하면서 진행하며, 사업장별 개최가 불가할 시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부집단교섭은 1일 1회, 정회는 노-사 각 3회 이내, 시간은 08:00~17:00까지 진행한다.
- ④ 사용자 측 교섭위원은 대표이사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사유서 제출) 위임은 임원까지로 한다. (단, 상견례 및 조인식은 대표이사가 필히 참석한다.)
- ⑤ 지부 집단교섭 사회 진행과 교섭결과 작성은 회차별 노-사가 교대로 진행하며, 교섭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간사가 확인 및 서명한다.

6-4. 교섭위원회 구성과 운영

- ① 중앙 및 지부의 임원과 부서장(실장) 그리고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섭위원 명단을 지부대의원 대회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발생되는 교섭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부 쟁대위(운영위)로 위임한다.
- ② 지부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매주 집단교섭 장소로 집결하여 현장순회 등 공동투쟁을 실천한다.
- ③ 교섭위원은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교육이수 등의 지침에 반드시 복무한다.
- ④ 교섭위원 및 조합원 실천의 날을 정하여, 조합과 지부의 투쟁 방침에 따라 투쟁을 배치한다.
- ⑤ 교섭 시작 전 사전회의를 통해 교섭전략, 전술을 공유하고 교섭 종료 후에는 전체 교섭위원들이 교섭상황을 공유, 향후 교섭전략을 수립한다.
- ⑥ 매주 1회 이상 지회별로 교섭 보고대회 또는 선전전 등을 진행하여, 중앙교섭·집단교섭·지회교섭 상황을 공유한다.

6-5.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중앙의 방침에 따라 지부 운영위를 지부 쟁대위(투쟁본부) 체계로 전환 및 해소한다.

6-6. 투쟁전술

- ① 세부 투쟁 전술은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②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공동투쟁에 아래와 같이 철저히 복무한다.
 1. 지부 상황실을 통하여 지부 쟁대위 결정사항에 대한 사업장별 집행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차기 쟁대위(운영위)에 보고한다.
 2.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지부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3. 중앙 및 지부 투쟁방침에 따라 매주 실천의 날을 진행한다.
4. 공동투쟁의 조직독려를 위해 지부는 지회 쟁대위(확대간부회의)시 적극 결합한다.
5. 공동투쟁이 실천되지 않으면 지부 확대간부를 해당사업장으로 동원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
6.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파업전술은 사업장 보충교섭 의견접근 시까지 유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사전에 지부 쟁대위(운영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지부 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 시에는 파업전술을 유보하고, 전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익일 사업 시부터 지부 파업전술을 수행하면 지부 집단교섭에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8. 총회 부결 시 투쟁전술 2항의 7호에 따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임금 외 내용의 요구를 통한 교섭 및 의견접근 사항은 사전에 지부 쟁대위 승인 후 진행한다.
9. 교섭원칙 4항에 의거 사업장 대표이사가 상견례와 해당 사업장 집단교섭 두 번 이상 불참 시 해당 사업장은 2시간의 추가 파업을 진행한다.

6-7. 투쟁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

- 역할 :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진행상황과 쟁대위(운영위) 결정사항 집행점검
- 담당 : 사무국장, 총무부, 정책부

② 조직관리 및 쟁의대책팀

- 역할 : 사업장별 조직력 및 투쟁 점검, 교섭위원회(파업실천단) 운영과 투쟁전략 기획
- 담당 : 부지부장, 조직부, 미조직부, 노안부

③ 선전홍보 및 교육팀

- 역할 : 조합 및 지부의 투쟁방침과 요구안과 교섭경과에 대한 선전홍보(교섭속보 발행) 및 교육
- 담당 :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교육부, 선전부

6-8. 타결방침

- ① 조합의 타결 방침을 준수하며,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집단교섭 타결 없다.
- ② 지부 집단교섭 타결 없이 사업장 보충교섭 타결 없다.
(단, 대각선교섭 사업장의 타결 시기는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③ 지부 집단교섭 내에 임금(기본급, 시급, 타결금, 일시금, 성과금 등) 관련 사항들을 포함하여 타결한다
- ④ 보충교섭 의견접근 시 총회개최 2시간 전 운영위에 심의·승인을 요청한다.

7. 14기 1년차 주요 투쟁 흐름

※ 조합 사업계획 자료 내려오면 반영하여 작성예정

8. 경주지부 2026년 집단교섭 요구안(초안)

[참고] 2022년~25년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

년도	내용													
2022년	<p>【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2일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부여한다.</p> <p>【정년퇴직 관련 신규채용】 회사는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 퇴직 발생 전 신규채용을 완료한다.(단, 노사간 합의로 유예할 수 있다.)</p> <p>【퇴직자 연차 유급휴가 특례】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이 마지막 근무년도에 1년간 8할이상 출근할 경우 그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입사일 기준 사업장 제외)</p> <p>【단독업무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유해, 위험작업 수행 노동자의 단독업무를 금지하고 2인 1조로 근무 한다. (본 항의 적용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단독업무 금지를 위한 추가인력은 신규채용한다. <p>【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이 근속 10년 이상 또는 만40세 이상일 경우 2년에 1회 종합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배우자 포함)</p>													
2023년	<p>【기업의 사회적 책무】 회사는 국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며, 해당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p> <p>【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은 아래와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준표</th> <th>기준 (종업원 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00명미만</td> <td>200만원</td> </tr> <tr> <td>201명~300명</td> <td>500만원</td> </tr> <tr> <td>301명~400명</td> <td>600만원</td> </tr> <tr> <td>401명~500명</td> <td>700만원</td> </tr> <tr> <td>501명 이상</td> <td>1,100만원</td> </tr> </tbody> </table> <p>【공직취임 인정】 회사는 선출직 공직(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당선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취임기간 동안은 계속 근로연수로 인정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p> <p>【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저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 직종, 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p> <p>【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 배상】 발암물질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매 2년마다 (짝수년에) 실시한다.</p> <p>【휴게소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편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휴게실을 설치한다. 사내하청 및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동일 적용한다. 노사는 공동으로 경주 공단 내 중소, 영세사업장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지역 자체에 요구한다. 	기준표	기준 (종업원 수)	금액	200명미만	200만원	201명~300명	500만원	301명~400명	600만원	401명~500명	700만원	501명 이상	1,100만원
기준표	기준 (종업원 수)		금액											
	200명미만	200만원												
201명~300명	500만원													
301명~400명	600만원													
401명~500명	700만원													
501명 이상	1,100만원													

년도	내용
2024년	<p>【조합 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p> <p>【조합 활동 시간】 조합활동은 지부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 기 합의된 비전임 간부에 대해 단체교섭 참석. 사전 사후 회의 참석, 교섭 및 회의 준비, 교섭보고 업무 등 교섭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p> <p>【휴직자의 처우】 회사는 휴직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성과금 및 노사합의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건강진단】 회사는 종합검진 시 조합원과 배우자에 대하여 종양표지자 검사를 추가하여 진행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p> <p>【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회사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조합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2항에 부합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간병비와 실제 지급된 간병비 차액을 부담한다.</p>
2025년	<p>【조합 가입범위와 활동보장】 회사는 조합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조합 규약 및 지회 규칙에 따른다.</p> <p>【ESG경영 도입】 회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ESG경영을 적극 도입하며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Environmetal) 회사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축소를 위해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는 회사의 지붕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공동 요구한다. 기존 사회공헌기금 조정을 통하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을 배치한다. 2) 사회(Social) 회사는 인권, 성별평등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한다. 3) 지배구조(Governance) 회사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과 기후환경과 관련된 내용 및 그 세부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p>【해외 생산품 반입 금지】 회사는 국내 생산품에 대한 해외 물량 국내 반입 시 반드시 조합과 사전 합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p> <p>【자기 개발 지원】 회사는 만 55세부터 정년퇴직 전까지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취득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을 취득 시 국비지원금 외 본인부담금(훈련비) 100%를 지원한다. (퇴직시까지 최대 3종목, 연간한도 30만원, 증빙자료 제출)</p>

8-1. 제 19 조 [채용] (항목추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① 직원의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항추가)

요구 취지:

-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신체적 조건·재산 등 편견 요소 정보를 수집·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위주로 평가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
-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
- 현재 일부의 사업장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 중에 있고 여러 논란을 해소함
- 경주지부는 채용과 관련하여 조직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존재 했고, 자본의 개입으로 신규인원에 대한 충원이 진행된다는 의심도 있음. 노사모두 채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을 없애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임

8-2. 제 00 조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신설)

① 회사는 2026. 3. 10.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자들이 조직·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교섭형태와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및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기존에 진행되던 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회사가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사는 노사자치 원칙을 존중하고, 업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직접고용관계를 넘어 확대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요구 취지:

- 노조법 2.3조 시행령이 시행되면 교섭중 창구단일화 절차의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교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보아야함.

8-3. 제 00 조 【○○○】 (주휴일 관련요구) / 추가

1. 회사는 근로기준법, 노동절법 등 관련법령과 판례에 따라 아래의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수당
-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휴일수당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11호
-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③ 1월 1일
-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⑤ 삭제 <2005. 6. 30.>
- ⑥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⑦ 5월 5일 (어린이날)
- ⑧ 6월 6일 (현충일)
-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⑩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⑪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③ 노동절법에 따른 5월 1일 휴일수당

요구 취지:

- 목적은 '실질임금 하락 없는 완전 주 40시간 챙취'임.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등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주장은 이를 위한 수단임.
-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인식되어 왔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만 놓고 보면 통상시급이 오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임금상승 효과가 없음. 연장근로를 많이 해야 임금상승되는 구조임.
- 그러나 통상임금은 위와 같은 수당 이외에도 주휴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임. 이러한 수당들이 정상적으로 통상시급이 적용되어 지급된다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도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음.
- 주휴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일시적으로 임금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도 연장근로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총 인건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등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음. 주휴수당 등의 정상화는 단순히 통상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단순한 임금상승이 아니라 1주에 40시간만 일하면서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모두 받는 노동조건을 만드는 과정임. 그것이 바로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취지임.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항목:

① 주휴수당(52개)

- 근기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판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다74144 판결 등)

② 노동절 법정휴일수당(1개)

- 근로자의날법 또는 노동절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공휴일 법정휴일수당(약 15개)

- 근기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0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11호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 삭제 <2005. 6. 30.>, ⑥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 (어린이날), ⑧ 6월 6일 (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⑪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 집단교섭 사업장 적용 현황

순	지회명	주휴수당 적용 시급		법정휴일	비 고
		기본시급	통상시급		
1	다스	◎		기본시급	
2	디에스시	◎		기본시급	주휴수당(상여금등) 소송중
3	아이티더블유	◎		기본시급	
4	엠에스오토시스	◎		기본시급	
5	우영산업	◎		기본시급	
6	현대IHL	◎		기본시급	주휴수당 소송중(법률원)
7	리어코리아		◎	통상시급	25년 합의 통상시급 적용
8	명성공업	◎		통상시급	
9	발레오전장시스템		◎	통상시급	
10	에코플라스틱		◎	기본시급	25년 임금개편시 OT시간 적용
11	일진베어링		◎	통상시급	
12	현대성우쏠라이트	◎		통상시급	
13	금강	◎		기본시급	
14	세진	◎		기본시급	

8-4. 제 104 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수정)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요구 취지 :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 그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음.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확히 명시하는 것을 하한으로 함. (임금협약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는 것은 지부 집단교섭은 매년 진행되고 있음.)

8-5. 2026년 지부집단교섭 의제 총괄

1. 제 19 조 【 채용 】 (항목추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① 직원의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항추가)

2. 제 00 조 【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 (신설조항)

① 회사는 2026. 3. 10.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자들이 조직·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교섭형태와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및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기준에 진행되던 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회사가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사는 노사자치 원칙을 존중하고, 업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직접고용관계를 넘어 확대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제 00조 【○○○】 (주휴일 관련요구) / 추가

1. 회사는 근로기준법, 노동절법 등 관련법령과 판례에 따라 아래의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수당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휴일수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11호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 삭제 <2005. 6. 30.>, ⑥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 (어린이날), ⑧ 6월 6일 (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⑪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③ 노동절법에 따른 5월 1일 휴일수당

4. 제 104 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수정)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0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 경주지부 14기 1년차 예산(안)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 1) 2026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7,700원으로 산정함.
지역지부 전체 조합원은 96,200명임.
- 2) 1개월 전체 지부 둑은 $96,200\text{명} \times 27,700\text{원} \times 0.18 = 479,653,200\text{원}$ 임.
(지부교부금은 19%이나, 지역공동사업비 1%를 제외한 비율로 계산)
- 3) 전체 지부 둑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됨. 3개 지부에 월 6,500,000원이 지원됨.
전체 지부 둑에서 6,500,000원이 지급되면 473,153,200원이 남게 됨.
- 4)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4,919원이 나옴. (원단위 미만 올림)
- 5) 같은 방식으로 2026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5,068원임.
- 6)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수입은 최저교부금+(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 지부(납부)조합원수)이 됨.
- 7) 최저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 지부(납부)조합원수임.
- 8)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 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됨.
- 9) 아래는 최저교부금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임

인원	금액	대상지부
2,000명 이하	2,500,000원	구미, 부산양산
2,500명 이하	1,500,000원	전북

[14기 1년차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구분	2026년 1월~2026년 7월 (월 수입)	2026년 8월~2026년 12월 (월 수입)
최저교부금 ○	최저교부금+(4,919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5,068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	4,919원 × 지부(납부) 조합비	5,068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 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해야 함

1. 경주지부 14기 1년 예산(안)

1) 일반회계 수입

과목			목번	내 역	예산(단위, 원)	비고
관	항	목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1	교부금 1인 5,068원 × 4,436명 × 8월 ~ 12월 = 112,408,240 (조합원 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265,153,028	
기타 수입	기타 수입	기타 수입	2	예금이자	20,000	
합계					265,173,028	

2) 일반회계 지출

2-1. 운영비

과 목			목 번	내역	26년 예산안	목별 지출율 %	25년 예산안	25년 집행율 %
관	항	목						
운 영 비	유 지 비	사무실관리비	1	▣정수기 렌탈료 = 720,000원 ▷ 60,000 × 12월 = 720,000원	720,000	0.3%	360,000	100%
		신문도서비	2	▣주간지 1년 = 450,000원 ▷ 225,000 × 2(경향,한겨레) = 450,000원	600,000	0.2%	600,000	75%
				▣기타 도서구입비 = 150,000원				
		소모품비	3	▣프린터 토너 등 = 600,000원 ▷ 100,000 × 6회 = 600,000원	3,630,000	1.4%	3,740,000	53%
				▣A4복사용지 = 2,530,000원 ▷ 23,000 × 10박스 × 11회 = 2,530,000원				
				▣기타 소모품비 = 500,000원				
		통신비	4	▣뿌리오(SMS) 100,000 × 3회 = 300,000원 ▣유선전화,FAX,인터넷 요금 = 1,200,000원 ▷ 100,000 × 12월 = 1,200,000원	2,148,000	0.8%	2,048,000	76%
				▣우편 발송료,잔액증명서,UMS수수료 = 120,000원 ▷ 10,000 × 12월 = 120,000원				
				▣엔파스 = 528,000원 ▷ 44,000원 × 12월 = 528,000원				
		인쇄비	5	▣복사기 임대료 = 2,160,000원 ▷ 180,000 × 12월 = 2,160,000원				
	차량 유지비	기타유지비	6	▣커피 및 음료 = 2,400,000원 ▷ 200,000 × 12회 = 2,400,000원	3,600,000	1.4%	3,600,000	40%
				▣문구류 및 각종 비품구입 등 = 1,200,000원 ▷ 100,000 × 12회 = 1,200,000원				
				▣유류비 = 5,280,000원 ▷ 110,000 × 4회 × 12월 = 5,280,000원	12,280,000	4.6%	12,100,000	79%
				▣엔진오일 = 1,600,000원 ▷ 200,000 × 8회 = 1,600,000원				
				▣보험료,세금(자동차세,환경분담금) ▷ 1,200,000 × 2대 = 2,400,000원				
				▣기타유지비 = 3,000,000원				

		복리후생비	8	■식대 = 46,464,000원 ▷ 11,000 × 22일 × 16명 × 12월 = 46,464,000원 ■타지역 유류지원비 = 3,360,000원 ▷ 70,000 × 4인 × 12월 = 3,360,000원	49,824,000	18.9%	43,560,000	100%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9	■지부장 = 300,000 ■수석부지부장 = 250,000 ■부지부장(2명) = 400,000 ■사무국장 200,000 ▷ 1,150,000 × 12월 = 13,800,000원 ■상집부장 = 23,400,000원 ▷ 150,000 × 13명 × 12월 = 23,400,000원	37,200,000	14.0%	39,000,000	100%
운영비 합계					112,162,000	42.4%	107,168,000	42.6%

2-2. 사업비

과 목			목 번	내역	26년 예산안	목별 지출율	25년 예산	목별 지출율
관	항	목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0	■조직부회의 = 240,000 ▷ 120,000 × 2회 = 240,000	8,160,000	3.1%	17,880,000	54%
				■문화담당자회의 = 240,000 ▷ 120,000 × 2회 = 240,000				
				■교육위원회의 = 240,000 ▷ 120,000 × 2회 = 240,000				
				■선전부회의 = 240,000 ▷ 120,000 × 2회 = 240,000				
				■노안부회의 = 240,000 ▷ 120,000 × 2회 = 240,000				
				■미조직위원회의 = 240,000 ▷ 120,000 × 2회 = 240,000				
				■여성위원회의 = 240,000 ▷ 120,000 × 2회 = 240,000				
				■감사위원회의 = 480,000 ▷ 120,000 × 4회 = 480,000				
				■기타 회의 = 6,000,000 ▷ 120,000 × 50회 = 6,000,000				
회의비	대의원대회	11	■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기타 = 8,000,000	8,000,000	3.0%	7,000,000	61%	
		12	■지부운영위 = 4,136,000 ▷ 22,000 × 47명 × 4회 = 4,136,000	4,136,000	1.6%	3,960,000	74%	
		13	■집행위원회 = 2,376,000 ▷ 22,000 × 18명 × 6회 = 2,376,000	2,376,000	0.9%	2,244,000	58%	
		14	■운영비 = 4,000,000 ▷ 10,000 × 5명 × 20일 × 4분기 = 4,000,000 ■지부 감사위원회의 = 2,640,000 ▷ 22,000 × 30명 × 4회 = 2,640,000 ■감사위원회 수련회 66,000 × 30명 = 1,980,000 ▷ 66,000 × 30명 = 1,980,000	8,620,000	3.3%	8,620,000	99%	
	정치위원회	15	■운영비 = 1,000,000 ▷ 10,000 × 5명 × 20일 × 1분기 = 1,000,000	1,000,000	0.4%	3,400,000	66%	
		16	■지부 정치위원회 회의 = 792,000 ▷ 22,000 × 12명 × 3회 = 792,000 ■수련회 지부 정치위원회 = 792,000 ▷ 66,000 × 12명 × 1회 = 792,000	1,584,000	0.6%	1,100,000	71%	
		17	■집행위 수련회 = 2,376,000 ▷ 66,000 × 18명 × 2회 = 2,376,000 ■운영위 수련회 66,000 × 47명 × 1회 = 3,102,000 ■자료집, 장소 대여, 기타 = 600,000	6,078,000	2.3%	5,814,000	62%	

			▷ $200,000 \times 3회 = 600,000$				
부서 사업비	여성사업비	18	▣ 지부 여성위원회 회의 = 396,000 ▷ $11,000 \times 12명 \times 3회 = 396,000$ ▣ 지부 여성위원회 회의 = 792,000 ▷ $22,000 \times 12명 \times 3회 = 792,000$		5,960,000	2.2%	5,244,000
			▣ 수련회 지부 여성위원회 = 792,000 ▷ $66,000 \times 12명 \times 1회 = 792,000$				
			▣ 수련회 지부 여성간부 = 2,480,000 ▷ $66,000 \times 30명 \times 1회 + 강사비 500,000 = 2,480,000$				
			▣ 여성위원 역량강화 강사비 = 1,200,000 ▷ $400,000 \times 3회 = 1,200,000$				
			▣ 사건상담 조사비(간담회) 및 여성사업 관련 홍보비 = 300,000				
	총무사업비	19	▣ 사무장 및 총무회계담당자회의 = 825,000 ▷ $11,000 \times 25명 \times 3회 = 825,000$ ▣ 사무장 및 총무회계담당자회의 = 1,650,000 ▷ $22,000 \times 25명 \times 3회 = 1,650,000$		6,429,000	2.4%	6,429,000
			▣ 수련회 = 3,300,000 ▷ $66,000 \times 25명 \times 2회 = 3,300,000$				
			▣ 지회지원, 간담회, 장소대여, 교육 등 654,000				
	미조직 사업비	20	▣ 미조직회의 = 726,000 ▷ $11,000 \times 22명 \times 3회 = 726,000$ ▣ 미조직회의 = 1,452,000 ▷ $22,000 \times 22명 \times 3회 = 1,452,000$		9,582,000	3.6%	8,351,000
			▣ 수련회 = 2,904,000 ▷ $66,000 \times 22명 \times 2회 = 2,904,000$				
			▣ 현수막 = 500,000				
			▣ 조직화상담 및 신규조합원 간담회 = 2,000,000				
			▣ 이주노동자 통역 사업비 = 2,000,000				
			▣ 선전담당자회의 = 693,000 ▷ $11,000 \times 21명 \times 3회 = 693,000$ ▣ 선전담당자회의 = 1,386,000 ▷ $22,000 \times 21명 \times 3회 = 1,386,000$				
			▣ 선전부수련회 = 2,772,000 ▷ $66,000 \times 21명 \times 2회 = 2,772,000$ ▣ 강사비 및 장소대여비 = 1,200,000				
	선전사업비	21	▣ 선전지 제작 및 배포 = 900,000 ▷ $300,000원 \times 3회 = 900,000$ ▣ 광고보드 1년 약정 = 560,000 ▣ 어도비 1년 약정 = 340,000 ▣ 템플릿 사이트 1년 약정 = 350,000 ▣ AI 플랫폼 계정 이용료 = 360,000 ▣ 외장하드 구입(5TB) = 300,000 ▣ 기타 물품구입 및 수리비 = 1,000,000		9,861,000	3.7%	8,158,000
	노안사업비	22	▷ $11,000 \times 30명 \times 3회 = 990,000$ ▣ 노안담당자회의 = 1,980,000 ▷ $22,000 \times 30명 \times 3회 = 1,980,000$		8,930,000	3.4%	9,085,000
			▣ 수련회 66,000 × 30명 × 2회 = 3,960,000				
			▣ 벌암물질조사사업, 강사비, 선전홍보비, 장소대여 = 2,000,000				
			▣ 정책조통담당자회의 = 1,056,000 ▷ $11,000 \times 32명 \times 3회 = 1,056,000$				
	정책/조통 사업비	23	▣ 정책조통담당자회의 = 2,112,000 ▷ $22,000 \times 32명 \times 3회 = 2,112,000$		10,392,000	3.9%	9,661,000
			▣ 수련회 = 4,224,000 ▷ $66,000 \times 32명 \times 2회 = 4,224,000$				
			▣ 강사비 및 회의실 등 500,000				

			■경영분석비용지원사업 2,000,000 ■각종정책사업제반비용 500,000					
			■교육담당자회의 = 594,000 ▷ 11,000 × 18명 × 3회 = 594,000 ■교육담당자회의 = 1,188,000 ▷ 22,000 × 18명 × 3회 = 1,188,000 ■수련회 = 2,376,000 ▷ 66,000 × 18명 × 2회 = 2,376,000 ■강사비 = 600,000 ▷ 300,000 × 2회 = 600,000 ■강의실, 비품 등 = 600,000 ▷ 300,000 × 2회 = 600,000 ■조합원교육, 간부교육 = 1,760,000 ▷ 22,000 × 20명 × 4회 = 1,760,000 ■노조간부기본과정 = 1,320,000 ▷ 22,000 × 10명 × 6회 = 1,320,000					
	교육사업비	24		8,438,000	3.2%	7,698,000	75%	
			■조직담당자 회의 = 1,485,000 ▷ 11,000 × 45명 × 3회 = 1,485,000 ■조직담당자 회의 = 2,970,000 ▷ 22,000 × 45명 × 3회 = 2,970,000 ■조직담당자 수련회 = 5,940,000 ▷ 66,000 × 45명 × 2회 = 5,940,000 ■간담회, 집회행사, 자료, 장소대여 등 = 24,000,000 ■강사초빙= 1,000,000 ▷ 500,000 × 2회 = 1,000,000 ■각종 조직사업 제반비용 = 500,000					
	조직사업비	25		35,395,000	13.3%	37,050,000	60%	
			■조직강화위원회 회의 = 858,000 ▷ 22,000 × 13명 × 3회 = 858,000 ■합동수련회 = 1,980,000 ▷ 66,000 × 30명 = 1,980,000 ■도시락간담회 및 조직배가사업 = 2,000,000 ■복수노조 조직화 공동사업 = 1,000,000					
	조강위사업비	26		5,838,000	2.2%	2,640,000	79%	
			■청년위원회 회의 = 660,000 ▷ 22,000 × 10명 × 3회 = 660,000 ■청년위원회 수련회 = 660,000 ▷ 66,000 × 10명 × 1회 = 660,000 ■장소 대관 및 강사료 = 1,300,000 ▷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400,000×2회 = 800,000 ▷ 장소대관료 × 1회 = 500,000 ■선전지 제작 및 배포 100,000 ×2회 = 200,000 ■자율소모임 = 1,000,000 ▷ 200,000 × 5회 = 1,000,000					
	청년위원회	27		3,820,000	1.4%	0	0%	
	연대 사업비	28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 지원, 지역사회단체,(간담회) = 5,000,000	5,000,000	1.9%	4,000,000	59%	
사업비 합계				149,599,000	56.4%	148,334,000	69%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9	예비비	3,412,028	1.3%	4,807,484	0%
총합 (운영비+사업비)				265,173,028	100%	260,309,484	78%	

3) 투쟁기금

3-1) 투쟁기금 수입

과목			목번	내 역	26년 예산	비고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2년 이월금 54,725,118 13기 2년 일반회계 이월금 60,506,728 13기 2년 사업지원금 이월금 203 13기 2년 복수노조사업비 이월금 396	115,232,445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2	예금이자 등 수입	20,000	
합계					115,252,445	

3-2) 투쟁기금 지출

과목			목번	내 역	26년 예산
관	항	목			
집회비	집회비	집회비	1	집회 및 행사의 부대/물품 비용 및 등에 사용	
쟁의비	쟁의비	쟁의비	2	선전홍보, 각종 자료집 등 제작, 조합원 및 간부역량 강화 비용 등 부상자 치료 및 법률구조비 등 필요한 사항에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조직배가 사업장 조직강화 지원 조합원 참여 행사 지원 조합원 단결력 강화 사업 이주노동자 행사 지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합계					

지역공동사업비 편성 및 산정방식

1. 지역지부에 속한 조합원(조합비)의 경우

- 2026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7,700원으로 산정함.
지역지부 전체 조합원은 96,200명임.
- 1개월 전체 지역공동사업비는 $96,200\text{명} \times 27,700\text{원} \times 0.01 = 26,647,400\text{원}$ 임. 전체 지부 뒷에서 최저공동 교부금이 지원됨. 최저공동교부금은 전체 지역공동사업비의 5.6% 정도임. 5.6%를 제외한 금액인 25,155,145원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62원이 나옴. (원 단위 미만 올림)
-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times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수>이 됨.
- 같은 방식으로 2026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는 270원임. (원단위 미만 올림)
- 아래는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임

금액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
50만원 미만	100만 원 지급	구미
150만원 미만	50만 원 지급	경주, 대구, 부산양산, 포항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26년 1월~2026년 7월 (월 수입)	2026년 8월~2026년 12월 (월 수입)
최저공동사업비 ○	최저공동사업비+(262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270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 ×	262원 × 지부(납부) 조합비	270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해야 함.		

4) 지역공동사업비

4-1) 지역공동사업비 수입

과목			목 번	내 역	26년 예산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2년 이월금 63,798,669	63,798,669
교부금	교부금	최저교 부금	2	최저공동사업비 500,000 × 12월 = 6,000,000	6,000,000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3	교부금 1인 262원 × 4,436명 × 01월 ~ 07월 = 8,135,624 교부금 1인 270원 × 4,436명 × 08월 ~ 12월 = 5,988,600	14,124,224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4	예금이자 등 수입	20,000
합계					83,942,893

4-2) 지역공동사업비 지출 관항목

과목			목번	내 역
관	항	목		
공동사업비지출	공동사업비지출	공동사업비지출	1	지역 공동사업, 어울림한마당, 3·8여성의날, 민주노총 경주지부 송년회 등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5) 특수목적기금

5-1) 특수목적기금 수입

과목			목 번	내 역	26년 예산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2년 이월금 722,740,097	722,740,097
결의금	결의금	결의금	2	경주지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조합원 결의금 1인 7,500원 × 4,122명 × 12월	370,98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3	정기적금이자 13,822,841 예금이자 35,846	13,858,687
합계					1,107,578,784

5-2) 특수목적기금 지출

과목			목번	내 역
관	항	목		
임금	임금	임금	1	경주지부 특별결의금 세칙에 의거한 임금지급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2	경주지부 간부교육 및 수련회 비용 결의 후 지출 타지부 소속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육 등 지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6) 미조직지원금

6-1) 미조직지원금 수입

과목			목번	내 역	26년 예산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2년 이월금 3,096,042	3,096,042
조합 지원금	조합 지원금	조합 지원금	2	14기 1년 지원금액 확정 후 지급 됨 - 미조직 조직화 사업지원금 -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강화 사업지원 - 미조직 인건비 지원	10,000,000
				미조직 인건비 지원	
산별기금 교부금	산별기금 교부금	산별기금 교부금	3	지부 미조직기금 배분 - 산별기금(3만원 중 1만원)	0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4	예금이자 등 수입	10,000
합계					49,106,042

6-2) 미조직지원금 지출 관행목

과목			목번	내 역
관	항	목		
미조직사업	미조직사업	미조직사업	1	미조직 노동자의 전력적인 조직사업 용도 지출 신규사업장 투쟁 물품 지원 복수노조 사업장 간담회